

##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전면개정 : 2006. 10. 16.  
일부개정 : 2007. 1. 1.  
일부개정 : 2016. 7. 4.  
일부개정 : 2017. 8. 7.  
일부개정 : 2018. 8. 13  
일부개정 : 2019. 4. 15  
일부개정 : 2020.12.21

이 약관은 (주)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온라인 이용매체(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을 말하며 이하 "전자적장치"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기업온라인뱅킹 서비스**(일반적으로 캣아이(CAT-i Pro)서비스라 하고, 전화기에 의한 **폰뱅킹서비스** 및 현금입출금기에 의한 **자동화기기서비스**를 제외하며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법인고객과 은행이 정한 개인사업자 및 단체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서비스 이용신청)

-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은행에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낙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문서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서비스-거래내역조회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에서 **가상계좌서비스, Direct CMS** 등 은행이 지정하는 일부 금융거래는 **별도로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온라인뱅킹의 종류별 제공 서비스는 해당 온라인뱅킹 특약 또는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4)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4조 각호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사전 서비스 이용계약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2. 각종 상품 및 서비스 상담 신청
  3. 민원 신청 등

### 제2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

외국환관련 서비스, 예금/신탁/투자상품 관련 서비스, 대출 관련 서비스, 전자결제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은행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주요 서비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시행일 1개월 이전에 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1개월간 안내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3조 (본인 확인방법)

- (1) 은행은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의 열거된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 또는 은행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 ②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 ③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 (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 ④ OTP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에 의한 비밀번호
  - ⑤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⑥ 기타 부가적으로 은행이 요구한 질의 값
- (2) 은행은 별도의 서비스 이용 계약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계좌비밀번호(또는 카드비밀번호)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4조 (거래내역 확인방법)

- (1) 이용자는 계좌 입출금에 관한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 기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이용자의 단말기에 나타나거나 이용자가 프린트한 서비스 거래내용은 이용자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제1항의 기재 거래내역과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기록·저장된 내용만이 거래에 관한 확정적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 (3) 이용자는 확인한 거래내역의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동 기재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 (결제 단계)

- (1) 이용자는 **단독사용과 복수사용** 중에서 사용구분을 선택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용구

분은 이용자가 서면으로 은행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단독사용은 모든 거래를 1명이 처리하며, 복수사용은 2명 이상이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 (3) 이용자가 복수사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단계결재**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용신청서 상에 관리자 ID를 별도로 필수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리자 ID를 복수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추가관리자의 사용여부 및 별도의 **추가관리자 ID**를 이용신청서상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 이용자가 복수사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관리자(또는 추가관리자)가 금융거래시 필요한 이용자의 수와 결재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5) **은행은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복수사용 및 복수의 관리자 ID (관리자 및 추가관리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및 추가관리자)는 최대 4명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제6조 (이용자의 지정·변경 및 권한설정)

- (1) 관리자(및 추가관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의 등록자, 승인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관리자(및 추가관리자)는 등록자와 승인자가 등록/승인할 수 있는 거래지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 (3) 관리자(및 추가관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개별 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의 **이용자 한도와 업무권한(결재 참여여부, 결재순서, 이체한도, 결재한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 관리자(및 추가관리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한 등록자 및 승인자의 변경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5) **복수의 관리자 ID(관리자 및 추가관리자 ID 지정)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명의 관리자(또는 추가관리자)가 이용자생성/사용권한/결재선 지정 등을 등록한 후 다른 관리자(또는 추가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만 거래가 처리됩니다.**

#### 제7조 (계좌이체 서비스)

- (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2조에 추가하여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 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입금은행의 시스템 장애, 계좌번호 불일치 등에 의한 이체 불능 시에는 은행은 이를 재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며,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시스템 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이체 지정일이 은행 휴무일

일 때에도 휴무일에 거래를 처리합니다.

- (2) 이용자가 계좌이체 처리시 복수의 확인절차를 위하여 복수사용 및 다단계 승인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다단계 승인조작이 완료된 이후 은행이 정한 시간에 계좌이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 (3) 이용자는 승인을 본인 또는 신고된 승인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기타 해당 승인권자에 의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 자신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 (4) 복수사용 고객의 다단계 승인 서비스를 적용 받는 서비스의 종류는 은행이 정하여 고객이 선택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5) 이용자로부터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 (6) 대량이체의 경우 이체처리시 중계센터 장애, 해당 은행 장애 등으로 인한 이체불능 건에 대해서는 장애 회복시 자동으로 재처리하며 이용자는 은행이 재처리하기 전에 서비스를 통하여 재처리 실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7) 대량이체 처리시 이용자가 의뢰한 일괄출금 대상거래는 총 금액을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일괄로 인출하여 이용자가 의뢰한 계좌로 이체합니다. 만일 이체계좌 불명 등으로 의뢰한 입금계좌에 입금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정된 출금계좌에 재입금 처리합니다.

#### 제8조 (이체 한도)

- (1) 이용자는 이체 한도 금액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별로 1회 한도와 1일 한도를 정하여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업무별로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터넷뱅킹의 경우 이체 한도금액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기타 온라인 뱅킹 서비스의 이체 한도는 해당 서비스의 개별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3) 복수사용 고객의 경우, 제1항에 따라 기업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체한도를 부여 받은 이용자의 이체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직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이체 및 출금거래 이용계좌)

- (1) 이용자는 이체 등 서비스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인터넷뱅킹 복수사용 이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서비스를 통한 출금계좌 추가를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출금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이체의 서비스 신청시 입금대상계좌를 은행에 서면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시마다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

금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외화 송금거래 서비스 및 수출입서비스)**

- (1) 외화송금서비스는 이용자의 국내 혹은 해외로의 외화 자금의 송금을 위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하 "외화송금서비스") 이며, 수출입서비스는 이용자의 무역거래 활동 관련 수출과 수입거래를 위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입니다
- (2) 이용자는 외화송금서비스 및 수출입서비스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서 요구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은행에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은행은 외화송금서비스 및 수출입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제출한 제반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 절차를 필한 후 거래를 행하기로 합니다.
- (4) 은행은 이용자가 지시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령에 저촉되거나, 당해 계좌로부터의 인출 가능 금액이 송금 신청액(관련 수수료 포함)에 미달할 경우, 송금/수출입 의뢰 내용이 은행이 정한 외화 송금과 수출입 관련된 규정 및 절차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시된 송금 및 수출입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를 이용자에게 서비스별 전자적 장치 등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5) 외화송금거래와 수출입서비스는 외환거래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됩니다.

#### **제11조 (대출관련 서비스)**

- (1)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 은행이 제3조 본인확인 방법 및 기타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전에 체결한 대출약정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합니다.

#### **제12조 (전자판매 및 전자구매 서비스)**

- (1) 전자판매 및 전자구매 서비스는 구매/대리점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대출, 구매자금대출, 구매카드보증서 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 (2)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전자판매 및 전자구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전자어음 서비스)**

- (1) 전자어음 서비스란 전자어음법령에 의거 전자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및 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 (2)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전자어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이용수수료)

- (1)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표2)**에서 정한 **이용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은행은 제1항의 이용 수수료를 수수료 출금 지정계좌로부터의 차감을 통하여 해당 지급일 또는 이용자와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와 은행은 (별표2) 이용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4) **은행은 (별표2) 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9조를 준용합니다.**

#### 제15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제 사고신고, 변경 등)

- (1) 이용자는 제3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해킹, 피싱 등 전자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제공하는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은행의 웹사이트에 공지된 해킹, 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통장, 접근매체 등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한 신고내용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4)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4조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 전화번호 등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통해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서비스의 제한)

- (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2.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공동 이용하는 타 금융기관과 합산)하여 연속 10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3.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4. 은행이 안전한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한 관련 보안 프로그램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 5. 보안계좌와 같이 이용자가 거래 이용 제한을 설정해 놓은 경우
- 6. 휴일 또는 다음 영업일 업무개시를 위하여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인 경우 (제한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7. 은행이 제공한 각종 사고예방서비스를 고객이 신청하여 제한된 경우
- 8.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9.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은행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2)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해제를 신청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적장치를 통해서도 해제가 가능한 거래를 서비스를 통해 해제 후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해지)**

-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한 서비스의 해지는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가 서비스를 1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해지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용자 앞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3) 제1항에 의해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해지시점까지 미처리된 예약이체 자료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8조 (손실부담 및 면책)**

손실부담 및 면책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약관의 적용 등)**

- (1)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의 영업점 및 전자적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1개월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

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전자적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최소 변경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4)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5)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6) 이 약관은 이용자가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외환거래 기본약관 및 해당 거래별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래약관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20조 (관할)**

이 약관에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 칙 (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굿뱅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된 법인이용자 (은행이 정한 개인사업자 이용자를 일부 포함합니다)의 온라인뱅킹 서비스 관련사항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② 2006년 10월 16일 시행된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 칙 (3)**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CAT-i Pro 서비스 특약"의 관련사항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3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공인인증서의 발급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아 제한된 경우 약관 제16조(서비스의 제한) (2)항의 조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 칙 (5)**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6)**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7)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이체한도 (원화기준)**

구분	보안매체		OTP카드	보안카드
	기업인터넷뱅킹	출금	1회	5억원
1일			50억원	
외환		1회	5억원	
		1일	50억원	
전자판매		1회	1억원	
		1일	1억원	
전자구매		1회	1억원	
		1일	1억원	
전자어음 -발행		1회	1억원	
		1일	1억원	
전자어음 -수취		1회	1억원	
		1일	1억원	

- 은행과 약정에 의해 은행이 승인한 경우 1회/1일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별표2) 이용수수료 (기업인터넷뱅킹 캣아이(CAT-i Pro))**

서비스 구분		수수료	부과기준
국내 이체 (당행)	빠른이체	면제	단, 집금계좌(CMS)와 같이 사전에 수수료가 약정된 계좌로 계좌 이체시에는 약정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량/급여이체		
국내 이체 (타행송금)	빠른 이체	500원	1건, 1억원 (1억원 초과시 1억당 500원 추가)
	대량/급여 이체	500원	1건, 1억원 (1억원 초과시 1억당 500원 추가)
	지준 이체	3,500원	1건
	예금주명 조회	면제	
외환	해외 계좌로의 전신 당발송금 (해외송금)	7,000원	1건
	국내 외화 자금이체 (OMT)	5,000원	1건

	수입신용장개설,증액,기한연장 수수료	고객신용등급별 상이 (0.15%~0.35%/3 개월) 최저 20,000원	신용장금액, 만기
	수입신용장 기타조건변경 수수료	15,000원	1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수수료	10,000원	1건

단, 기타 이용수수료 및 거래실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항상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관명** :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심의번호 : 2011-01-425(심의일 2020.11.10))

2. **시행일** : 2020-12-21

3. **기존고객 적용여부** : 적용

4. **주요 제정(변경) 내용**

- 제 3 조 (본인 확인방법)
- 제 17 조 (서비스의 해지)

5. **신구 조문 대비표**

변경전	변경후
<b>제 3 조 (본인 확인방법)</b> (1) (생략) ①~② (생략) ③ 공인인증서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b>제 3 조 (본인 확인방법)</b> (1) (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b>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 (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b>
<b>제 17 조 (서비스의 해지)</b> (1) (생략) (2) 이용자가 서비스를 12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b>제 17 조 (서비스의 해지)</b> (1) (현행과 같음) (2) 이용자가 서비스를 12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b>다만 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해지 예정일 최소 30 일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용자 앞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b>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